선진 외국의 해양레저 관련 제도의 고찰
- 해상안전을 중심으로 -

윤종휘, 이은방,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목 차>

1. 서언

2. 일본의 해양레저 현황 및 안전 관련 제도
  2.1 일본의 해양레저 현황
  2.2 일본의 해양레저 안전 관련 제도
    2.2.1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2.2.2 레저보트 등의 등록 및 검사제도
    2.2.3 해양레저 구난체계

3. 미국의 해양레저 현황 및 안전 관련 제도
  - USCG's System and Roles for Recreational Boat in USA
  3.1 Numbers of Recreational Boats
  3.2 USCG's Roles
  3.3 Organization for Recreational Boats
  3.4 USCG Facts

1. 서언

최근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에 따라서,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휴식시간, 즉, 여가의 증가이다. 육체회복에 필요한 기간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레크레이션(recreation)', 즉 재(re)창조(creation)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여가문화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주말을 TV 시청이나

집안일, 컴퓨터 게임 등으로 보내 왔지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 주말이 길어질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여행, 생활체육, 낚시, 등산 등 레저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부산일보, 2002년 7월 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주5일제 근무로 노동자들은 가족과 즐기는 시간과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여가활동의 고급화와 다양화,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며,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로 영위되었던 다양한 여가활동이 일상화,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국내레저 시장도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확산되어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버·다이빙, 보드 세일링, 서핑 등의 해양레저는 각 연령층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1999년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공포되어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행하고 있다. 또한 이법에 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 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 270만명 등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으로 점차로 늘어날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상에서의 안전한 레저활동이나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선진외국의 해양레저에 관한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해양레저 현황 및 안전 관련 제도

2.1 일본의 해양레저 현황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등에 수반하여, 일본 국민의 여가활동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국민의 여가 활동 중에서도,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버·다이빙, 보드 세일링, 서핑, 바다낚시 등의 해양레저는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몇년, 각 연령층이 폭넓게 보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Life Style의 일부로서 일본의 국민들에게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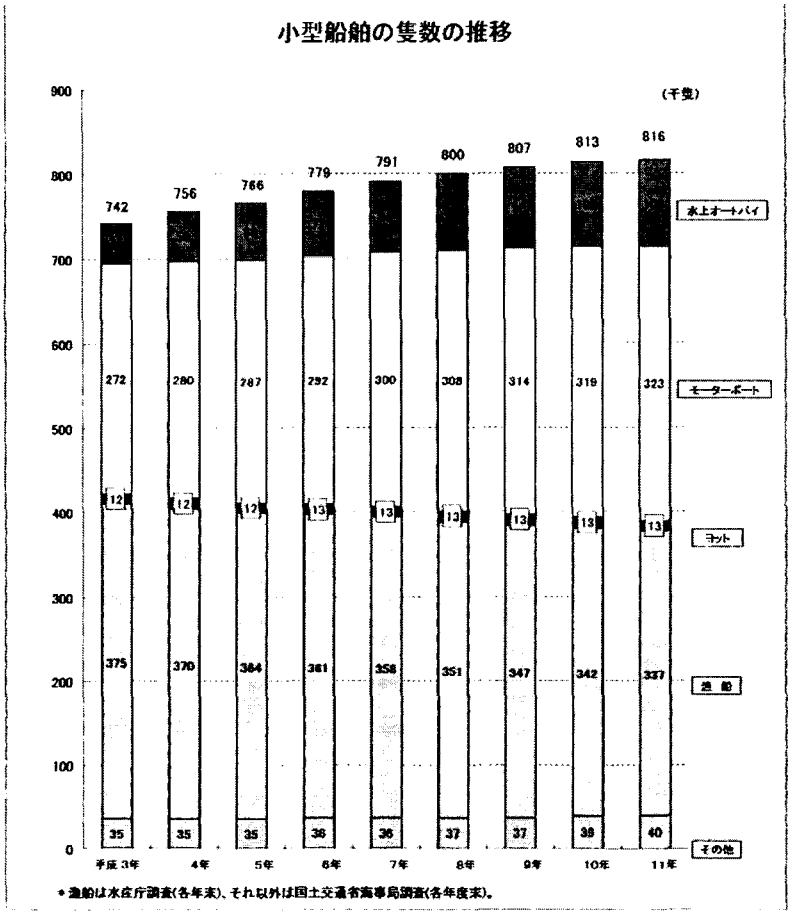

<그림 2-1> 소형선박의 척수 추이

또한 일본의 모터보트, 요트 등의 보유척수도 매년 증가하여, 1999년도 말 현재로 모터보트 약 32만 3천척, 요트 약 1만 3천척 및 수상오토바이 약 10만 3천척으로 어선 등을 포함하면소형선은 81만 6천 여척으로 되어 있다. <그림 2-1>에 1991년에서 1999년까지의 9년간 소형선박의 척수 추이를 나타낸다.(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공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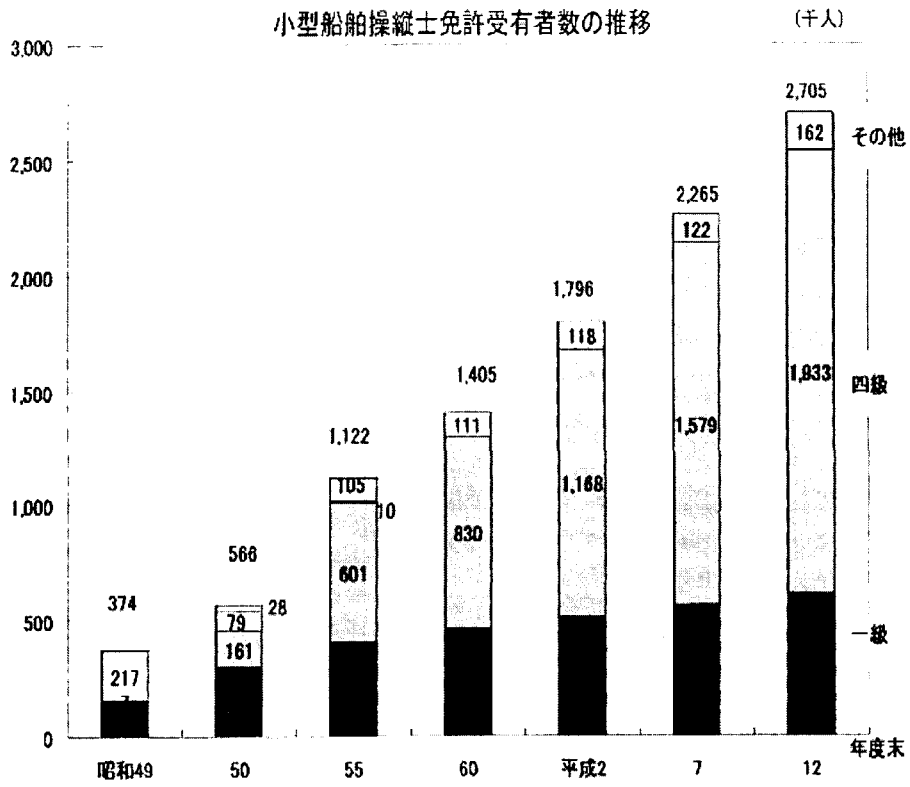

<그림 2-2>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 추이

또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의 조종에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총취득자수는 2000년말 현재 27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림 2-2>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의 추이를 나타낸다.(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직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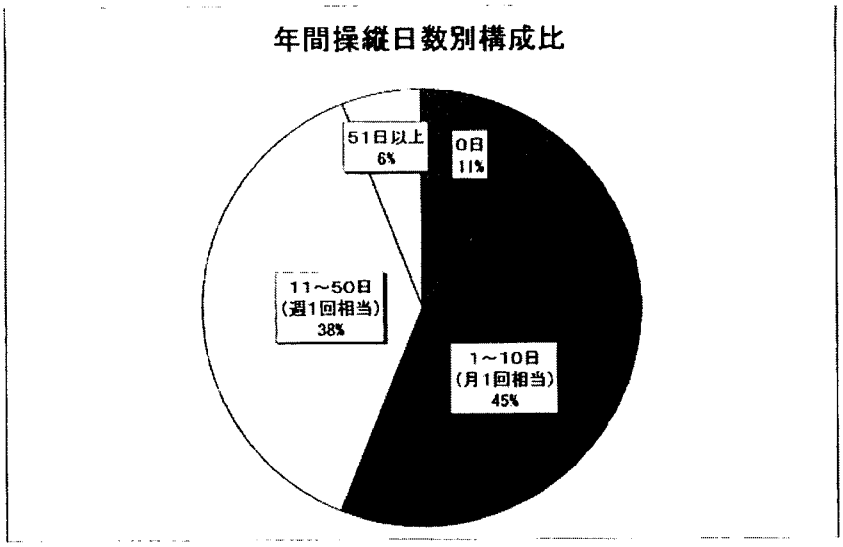

<그림 2-3> 년간조종일수별 구성비

또한 레저보트 등의 이용현황은 2001년 국토교통성에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년간 조종일수별 구성비는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1회 정도(하루-10일)가 45%, 주1회 정도(11-50일)가 38%, 51일 이상이 6%, 0일은 11%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년령별 구성비는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도 1.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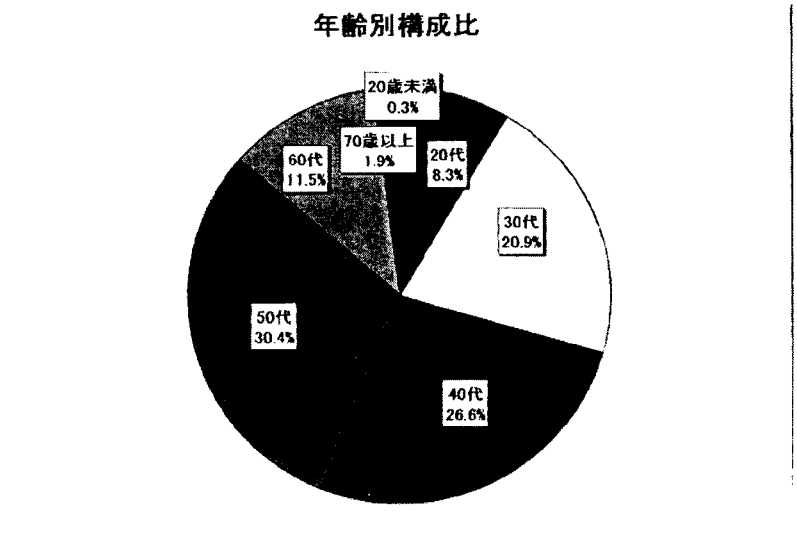

<그림 2-4> 년령별 구성비

이러한 현황에서 해양레저에 관련된 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해난에 의한 구조를 요청하는 선박 중에서 레저보트 등(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의 척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양레저의 보급, 정착, 활성화에 의한 사고의 증가가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00년도 레저보트 등의 충돌, 기관고장 등의 해난선박이 1,142척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선박해난의 40%를 차지하여 선박의 용도별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2001 해상보안 리포트)

이러한 사고로 인한 조난자는 3,171명에 달하며 이중 사망·해방불명자의 수는 29인이었다. 또한 선박해난 이외의 이유로서 레저보트 등에서 해중에 전락하거나, 선내에서 부상당한 승선자는 85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행방불명자의 수는 35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바다낚시나 해수욕 등의 해변에서의 마린 레저 활동으로 익수나 고립된 사고에 876명이 조우했으며, 이 사고에서 사망·행방불명된 자는 339명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인 지식, 기술의 부족이나 기상, 해상에 관한 주의 부족 등 인위적인 원인이 대부분이어서, 애호가의 해난방지 사상의 보급, 고양, 민간단체의 자주적인 안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2.2 일본의 해양레저 안전 관련 제도

2.2.1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가. 현황

일본에서 엔진이 부착된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기 위하여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 이 면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으로 수상오토바이나 선외기를 부착한 소형 낚시보트에서 외양을 항해하는 크루저까지 마린레저 보트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에는 선박의 크기와 항행구역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다.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 면허의 종류

1. 1급 소형선박소종사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전수역
2. 2급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연해구역(해안에서 20마일 이내의 수역)

3. 3급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해안에서 5마일 이내의 수역 및 평수구역*

* 평수구역 : 호수, 하천 및 항내, 동경만, 오오사카만 등의 지정된 수역

4. 4급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해안에서 5마일 이내의 수역 및 평수구역

5. 5급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호천* 및 해안에서 1마일 이내의 수역

* 호천 : 호수, 하천

6. 호천 소마력 5급 소형선박조종사

. 총톤수 5톤 미만이고 추진기관의 출력이 10마력 미만의 선박의 선장

. 항행구역 : 호천

* 해안에서 100마일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에는, 6급해기사 이상의 기관의 면허 자격을 가진 기관장을 승선시켜야 한다.

● 면허의 취득방법

1. 소형선박조종사 국가시험제도 - (재) 일본해양레저 · 안전진흥협회 주관

. 신체검사

시력 : 양안의 교정시력 0.6이상, 단, 한쪽 시력이 0.6미만인 경우, 다른 쪽 눈의 시야가 좌우 150도 이상일 것

색력 : 색맹 또는 강한 색약이 아닐 것, 단, 강한 색약이 있어도 항로표지의 채색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항행하는 시간대를 한정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

청력 : 5m 이상의 거리에서 화성어(보통크기의 대화) 또는 70.5 dB의 기적음의 변별이 가능할 것(보청기 사용 가능)

질병 및 신체장애 :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단,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선박 일부의 설비를 한정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 학과시험

1급 : 일반상식, 선박개요, 항해, 운용, 기관 법규

2급 : 일반상식, 선박개요, 항해, 운용, 기관 법규

3급 : 일반상식, 선박개요, 항해, 운용, 기관 법규

4급 : 일반상식, 선박개요, 항해, 운용, 기관 법규

5급 : 일반상식, 운용, 법규

호천소마력 5급 : 일반상식, 법규

. 실기시험

1급 : 1급 시험선 및 4급 시험선

2급 : 1급 시험선 및 4급 시험선

3급 : 1급 시험선 및 4급 시험선

4급 : 4급 시험선

5급 : 4급 시험선

호천소마력 5급 : 호천 시험선

* 1급 시험선 : 전장 10~15m의 디젤선
* 4급 시험선 : 전장 약 5m의 모터보트
* 호천 시험선 : 전장 약 5m이고 10마력 미만의 선박

2. 양성시설의 강습에 의한 취득방법

국토교통성 지정의 양성기관((재)일본선박직원양성협회, (재)尾道해기학원, (사)中國선박직원양성협회, (재)關門해기협회)의 양성코스를 수료하면, 국가시험의 학과 및 실기가 면제된다.

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의 개정 -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2002년 6월 7일 공포, 2003년 6월부터 시행)

● 개정의 개요

선박직원법에 근거한 소형선박조종사 제도의 기본적인 근간은 1974년의 법개정에서 창설된 것이지만, 제도창설 당시, 약 37만 명이었던 면허취득자는 2000년도 말에 약 270만 명까지 증가하여 왔다. 또한 제도의 창설 당시 면허취득자는 대부분 어업자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레저보트의 이용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허취득자의 실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 제도를 간결·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게되었다.

이 제도개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선박조종자와 선박직원의 자격체계의 분리

소형선박 - 선장 1명만으로 운항하면서 현행법체계상에서 대형선의 선장·기관장·통신장 등과 같은 「선박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레저보트 등의 이용자로부터 위화감을 가지게 함

2. 소형선박조종사의 자격구분 재편성

- 자격구분의 간소 및 합리화(5구분에서 3구분으로)

. 신 1급 소형선박조종사 - 원양까지 항행 가능
. 신 2급 소형선박조종사 - 연해부근만 항행 가능(5마일 이내)
. 특수소형선박조종사(수상오토바이 전용자격)

3. 소형선박조종자가 준수할 사항의 명확화
- 수영하는 사람 등에 대한 위험한 조종의 금지
- 음주 조종의 금지
- 어린이, 수상오토바이에 대하여 구명동의 등의 착용
- 폭주수역, 수상오토바이에 대하여서의 유자격자에 의한 자기조종

2.2.2 레저보트 등의 등록 및 검사제도

가. 레저보트 등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제도

일본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도(都)도(道)부(府)현(縣)이 측도, 선적표의 교부 , 검인을 행하여 왔던 총톤수 5톤 이상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보트 등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형선박등록제도의 개요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보트 등의 소형선박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등록에 의하여 공증하기 위한 제도

● 근거법령 : 「소형선박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7월 4일 공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

● 등록대행기관 :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 : Japan Craft Inspection)

● 적용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보트 등의 소형선박
(어선법에 의한 어선등록선 등은 제외)

1. 추진기관을 가진 다음의 기선 또는 범선
(1) 길이 3m 이상인 것
(2)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인 것
2. 추진기관이 없는 다음의 범선
(1) 길이 12미터 이상인 것
(2) 길이 12미터 미만인 다음의 것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

② 연해구역을 넘어서 항행하는 것
③ 사람의 운반용으로 같이 사용되는 것

● 등록의 종류

1. 신규등록 : 등록을 하지 않은 소형선박의 등록
2. 이전등록 : 판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행하는 등록
3. 변경등록 : 선박의 종류, 선적항, 선체식별번호, 추진기관의 종류, 소형선박의 길이·폭·깊이·총톤수 또는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행하는 등록
4. 말소등록 : 등록 소형선박이 침몰·해철된 경우 등에 행하는 등록

● 등록사항

1. 선박의 종류(기선 또는 범선)
2. 선적항
3. 선박의 길이·폭·깊이(측도에 의해서 실측한 수치)
4. 총톤수(측도에 의해서 실측한 수치)
5. 선체식별번호(선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메이커 등이 새긴 번호)
6. 추진기관의 종류(선외기, 선내기 또는 선내외기)
7.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공유의 경우, 그 지분)
8. 등록년월일
9. 선박번호(등록소형선박에 부여하는 당해 선박고유의 번호)

선명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는 민간법인화된(정부출자, 보조금 등이 없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인가법인이다. JCI는 국가사무의 대행기관으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소형선박의 선박검사를 행하고 있다. 소형선박의 등록측도사무도 국가를 대행하여 실시함으로서 선박검사와 함께 소형선박의 Total Service의 One Stop System이 구축되었다.

나. 레저보트 등의 소형선박의 검사제도

● 소형선박검사제도의 개요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을 항행시키기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안정성을 체크하고 선박의 사고방지와 승선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 검사대행기관 :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

● 대상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으로 다음의 것

1. 엔진이 부착된 선박

   모터보트, 기관이 있는 요트, 수상오토바이, 유어선, 어선(12해리이상 항해하는 것), 소형유어선겸용선, 객선, 작업선, 교통정, 기타선박(화물선 등)

2. 엔진이 없는 선박

   요트(연해구역을 넘어서 항행하는 것), 피예객선, 피예유어선, 노도객선(여객정원 7인이상)

● 검사의 종류

1. 정기검사 : 처음으로 선박을 항해시키거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받는 간단한 검사로서 선박의 용도에 따라 실시시기가 다르다.
3. 임시검사 : 개조, 수리 또는 설비의 신환 등을 행한 경우 받는 검사
4. 임시항행검사 : 선박검사증서의 교부를 받지 않고 선박을 임시로 항행시키는 경우 받는 검사

● 검사의 시기

1. 일반 소형선박(여객선 제외)

   정기검사 6년, 중간검사 : 정기검사 후 3년

2. 총톤수 5톤 미만의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

   정기검사 5년, 중간검사 :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

3. 총톤수 5톤 이상의 여객선

   정기검사 5년, 중간검사 : 정기검사 후 매 1년

2.2.3 해양레저 구난체계

해상보안청에서는 마린레저에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포스터, 팸플릿 등을 작성, 배포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일반선박의 항행이 적은 휴일 등에 항내의 일부를 개방하여 "보트 천국"을 개최하여, 체험승선이나 레이스 등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기술·매너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다에서 놀이, 바다와의 친숙, 바다에서 안전을 익히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고 방지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마린로드'(바닷길의 여행) 구상을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은 레저보트의 계류, 연료보급 등에 적합한 마리나 등을 숙박지로 하여, 이것들을 연결한 추천 루트를 설정하는 등, 해상안전, 관광, 레저 등의 정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하여, Safety Support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2001년도에는 학식경험자,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 등에 의한 조사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숙박지나 추천 루트의 설정요건 및 정보제공의 방법 등의 기본 개념을 구축하였다. 2002년도에는 동경만 및 주변해역 있어서 모델 사업에 착수한다.

한편, 마린레저 사고의 대부분이 연안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망・행방불명자를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기동구난사를 항공기지에 배치하여 연안구조 즉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망・행방불명자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구조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일본의 연안부에 있어서, 해난구조활동을 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 단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 일본수난구제회가 있으며, 전국의 임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수난구제회 산하의 1,054개소의 구난소 및 구난지소에 있어서, 국지적인 지형이나 기상・해상을 숙지하고 있는 46,510명의 자원봉사자 구조원이 그 지방 해난의 구조활동을 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해난 등에 출동회수는 467건이며, 529명의 인명, 228척의 선박을 구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마린레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 일본해양레저 안전・진흥협회에서는, 동경만, 이세만 및 오오사카만 및 그 주변해역에 있어서,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구조서비스(BAN : Boat Assistance Network)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스쿠버다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응급 구조사업(DAN JAPAN : Divers Alert Network of JAPAN)을 운영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망・행방불명되지 않기 위해서는, 라이프자켓의 착용과 사고의 신속한 통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 라이프자켓의 상시 착용, 2) 휴대전화 등의 연락수단 확보, 3) 긴급통보용 전화번호「118번」의 활용,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자기 구명책 캠페인」을 민관이 일체되어 전개하는 것과 함께, 소속회원이 라이프 자켓을 솔선하여 착용하는 「라이프자켓 착용 모델 마리나」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고 있다.

해상보안청에서는 귀중한 목숨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마린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위의 3가지 기본실천사항을 명심하게 하고, 낚시 등에 있어서는 사고의 조기통보는 물론, 동행자에 의한 구조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부터, 여러 사람에 의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3. 미국의 해양레저 현황과 안전관련제도

- USCG's system and roles for Recreational boat in USA

3.1 Numbers of recreational boats

There are 13,619,138 registered recreational boats on June 2000

3.2 USCG's roles

(1) making regulations

These federal statutes authorize the U.S. Coast Guard to regulate the manufacture and safety standards of recreational boats and boating-related equipment. They include regulations for:

Manufacturer certification
Identification of boats
Display of capacity information
Safe loading
Safe powering
Flotation
Electrical systems
Fuel systems
Ventilation
Start-in-gear protection
Navigation lights
Backfire flame control
Negligent operation
Operating a vessel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a dangerous drug
Numbering undocumented vessels
Reporting undocumented vessel accidents and casualties
State numbering and casualty reporting systems
Carriage and use of personal flotation devices (PFDs)
Carriage and use of visual distress signals (VDS)
Carriage of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Correction of especially hazardous conditions
Regulated boating areas
Vessel identification system

(2) enforcing law and regulation

federal laws in waterways

regulations for boat safety

navigational rules

Boating Under the Influence: Every boater needs to understand the risks of boat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BUI). It is illegal to operate a boa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in every state. The Coast Guard also enforces a federal law that prohibits BUI. This law pertains to ALL boats (from canoes and rowboats to the largest ships) and includes foreign vessels that operate in U.S. waters, as well as U.S. vessels on the high seas.

(3) providing MetLife Boat Safety Tips

The U.S. Coast Guard published a series of tip sheets on important boat safety topics. These online publications are made available by MetLifeAuto & Home. They include practical information and suggestions for preventing safety problems afloat - as well as dealing effectively with emergencies.

(4) giving consumer Advisories

The Coast Guard periodically publishes important notices for the boating public in publications called "Boating Safety Circulars." Content includes advisories about newly identified boating hazards, information on boat defects and recalls, rules and regulations for recreational boats, and other news and information of interest to the boating community. The publications are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established or proposed regulations and standards as well as other safety topics.

(5) operating Boating Safety Courses

Many boating safety courses are offered throughout the country, for all types of recreational boaters, and for boaters of all ages. Qualified volunteer organizations, such as the U.S. Coast Guard Auxiliary, U.S. Power Squadron, and others sponsor many courses, and many state boating agencies also provide classes.

Courses cover many aspects of boating safety, from boat handling to reading the weather, and from a "Water 'N Kids" class to courses for boaters who want to

learn electronic navigation skills. The most popular basic courses generally have from 6 to 13 lessons to provide a foundation of operational and safety instruction.

(6) establishing Aids to Navigation - Road Signs of the Waterway

Understanding and using the U.S. Aids to Navigation System is an important part of operating your boat safely.

The Aids to Navigation System is a consistent way to mark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territories to assist boaters in navigation, and alert them to obstructions and hazards.This system serves the same function as the safety signals and signs used in driving on streets and highways.

The U.S. Coast Guard is responsible for the placement and maintenance of Aids to Navigation in U.S. waters. These aids include lighted and unlighted beacons, ranges, leading lights, and buoys, as well as sound signals associated with these aids.

(7) operating GMDSS Communications

Th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is an international system using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y. Its main purpose is to enhance ship-to-shore communications by providing rapid, automated distress alerting, with positional information, if available

(8) servicing The Vessel Safety Check (VSC)

VSC is a free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 Coast Guard Auxiliary and U.S. Power Squadrons.

(9) providing information and news in publication

Alerts

Alerts are important advisories issued by the U.S. Coast Guard to all boaters or anyone on or near the water. These include new laws, rules, restrictions,health-related or equipment warnings, and other information that could seriously affect you or have an impact on your boating experience

Events

Here is a list of current or upcoming boating-related events that the Office of Boating Safety feels could benefit or interest you. To submit an event for possible posting

Boating Articles

Learn about the latest boating-related fads or safety hazards. Be amazed at survival stories that offer valuable lessons about boating safety. Most of all, be informed by these boating articles, stories, news releases, and more.

Federal Register

Want information about rules, proposed rules, and notices from feder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Executive Orders and other presidential documents? This daily publication offers you a wealth of information.

(10) providing real time information on line

(11) Preventing terrors from recreational boats

3.3 Organization for recreational boats

(1) Headquarter :Operations Directorate (G-O)

Auxiliary
Boating Safety
Bridge Administration
Law Enforcement
-Drug Interdiction
-Alien Migrant Interdiction
-Living Marine Resources
National Response Center
Navigation Center
Office of Auxiliary
Search and Rescue
-Search and Rescue Statistics
-Automated Mutual-assistance Vessel Rescue (AMVER) System
-National Search and Rescue Committee (NSARC)

(2) 2 area commander(Atlantic and Pacific area)

(3) 11 Districts

(4) United States Coast Guard Auxiliary: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uxiliary was established by Congress in 1939 to assist the Coast Guard in promoting boating safety. It boasts nearly 33,000 members from all walks of life who receive special training so that they may be a functional part of Team Coast Guard. Auxiliarists assist the Coast Guard in non-law enforcement programs such as public education, vessel safety checks, safety patrols, search and rescu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ast Guard Academy introduction programs for youth. Auxiliarists volunteer more than 2 million hours annually to benefit other boaters and their families.

(5) The U.S. Coast Guard Office of Boating Safety (G-OPB)

The U.S. Coast Guard Office of Boating Safety (G-OPB) is dedicated to reducing loss of life, injuries, and property damage that occur on U.S. waterways by improving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of recreational boaters

Vision, Mission, Goals

Our Vision As an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a servant of the public, the U.S. Coast Guard, in its role as the designated National Recreational Boating Safety Coordinator, is a leader in improving the boating experience of the maritime public. We are an organization noted for working in partnership with all stakeholders within the waterways activity spectrum and across all modes of transportation to reach consensus solutions. We measure our success by our customer satisfaction, and our customers' needs help define our workload and priorities.

Our Mission To minimize the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ociated with the use of recreational boats, through preventive means, in order to maximize safe use and enjoyment of U.S. Waterways by the public.

Our Goals

Improve the demonstrated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behaviors of boaters.
Improve the safety of boats and their associated equipment.
Improve the physical and operational boating environment.
Improve intermodal and interagency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assistance.

People of Boating Safety

The U.S. Coast Guard's Office of Boating Safety is charged with the important task of making boating safer for us all. Its many responsibilities include tracking boating accidents, looking for correlations among these incidents, recommending and implementing remedial measures, (such as recalls), and processing grants. It has three divisions:

Program Management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Division
Recreational Boating Product Assurance Division

View our organization chart below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divisions.

Website Awards

The USCGBoating.org website has been recognized for providing outstanding service to the recreational boating public. Our goal is to be the premier website supporting you. View the awards we've won below, which link to the websites that offer information on these awards.

We encourage you to submit suggestions to make the website more useful. Contact us through the U.S. Coast Guard Infoline at uscginfoline@gcrm.com

Partnerships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recognizes that by working together with other agencies, it will better accomplish its mission of minimizing the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property damag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ociated with the use of recreational boats, while maximizing safe use and enjoyment of U.S. waterways by the public.

The Coast Guard has formally established a cooperative agreement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ting Law Administrators (NASBLA), a professional association consisting of state, commonwealth, and provincial officials having

Office of Boating Safety Organization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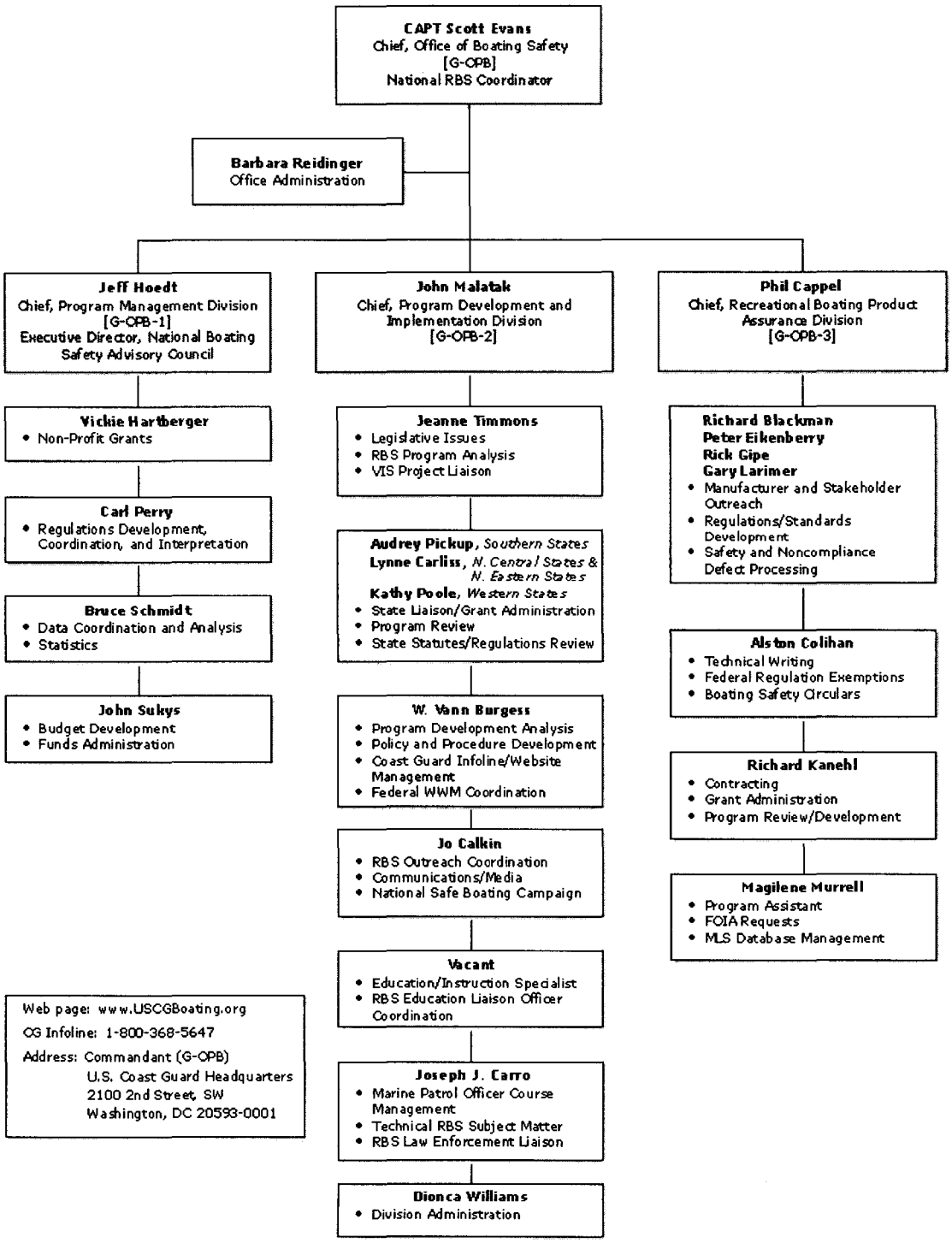

responsibility for administering and/or enforcing state boating law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oast Guard and NASBLA formally validates this cooperative partnership.

The Coast Guard has als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mployment of the U.S. Coast Guard Auxiliary in Support of the National Recreational Boating Safety Program. This agreement institutionalizes Coast Guard Auxiliary involvement in the Boating Safety Program.

U.S Coast Guard Infoline

Need more boating safety tips? Confused about security zones? Want to know what a Vessel Safety Check is?

Contact the Coast Guard's Infoline, operated by the Office of Boating Safety. This toll-free number connects you to a help desk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recreational boating safety.

3.4 U. S. Coast Guard Facts

Did you know

Each day, the men and women of the 35,000 plus active duty Coast Guard, 8,000 Reservists, and 32,000 Auxiliarists provide services over 3.4 million square mil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On an average day, the Coast Guard:

Conducts 109 Search and Rescue Cases.
Saves 10 lives
Assists 192 people in distress.
Protects $2,791,841 in property.
Seizes 169 pounds of marijuana and 306 pounds of cocaine worth $9,589,000.00.
Processes 238 Seaman licenses and documents.
Investigates 6 vessel casualties involving collisions, allisions, or groundings.

What else happens during an average day?

Small boats are underway for 396 sorties/missions.
Aircraft fly 164 missions, logging 324 hours, of which 19 hours are flown off

patrolling cutters.

Law enforcement teams board 144 vessels.

Cutter and small boat crews interdict and rescue 14 illegal immigrants.

Marine Safety personnel open 8 new cases for marine violation of federal statutes.

Marine Inspectors board 100 large vessels for port safety checks.

Vessel examiners conduct 20 commercial fishing vessel safety exams and issue 11 fishing vessel compliance decals.

Pollution investigators respond to 20 oil or hazardous chemical spills totaling 2,800 gallons.

Buoy tenders and Aids to Navigational Teams service 135 aids to navigation.

Vessel Traffic Service controllers assist 2,509 commercial ships entering & leaving U.S. ports.

Auxiliarists conduct 377 vessel safety checks and teach boating safety courses to 550 boaters.

Tell me more!

The U.S. Coast Guard seizes 1 drug smuggling vessel every five days.

Icebreakers and buoy tenders assist 196,938 tons of shipping daily during the Great Lakes ice season.

International Ice Patrol sorties provide ice safety information to facilitate the 163,238 tons of shipping during the North Atlantic ice season.

The Coast Guard is smaller than 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The number of Coast Guard personnel for 2001 is the same as it was in 1967.